

서울특별시

우편번호 100-744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전화 (02)3707-8235~6/전송3707-8249
 처리부서 : 주택재개발과(중구 서소문동 서소문별관 2동2층) 계장 : 권창주, 담당 : 김재섭

문서번호 주제 58531-44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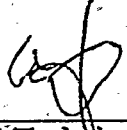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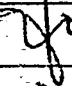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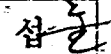
시행일자 1998. 5. 23

(경유)

수신 (제1안)

참조 내부결재



취급			시 장
보존			 법무담당관실차필
주택국장	전결		
주택재개발과장			
재개발2계장			
기안	김재섭		협조

제 목 신공덕계3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 결정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75호('96.4.3)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-59호('97.3.10)로 구역지정결정(구역범위 및 사업계획)된 신공덕계3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구역변경지정결정 신청이 있어 내용검토한바, 지적누락 정정에 의한 단순면적 정정(기정 : 15,408m²→변경 : 15,395m², 감 : 13m²)을 하고자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,

2.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의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, 도시재개발법 제4조(재개발구역의 지정)제1항,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결정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(재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고시)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 하고자 합니다.

따로붙임 : 1. 고시(안)1부.끝.

서울특별시 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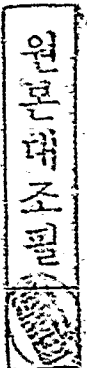
(제2안)

수신 : 행정자치부장관

제목 : 관보게재의뢰

1. 아래와같이 관보 게재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

가. 게재구분 : 고시

나. 게재건명 : 신덕제3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

다. 관련법규 :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

따로붙임 : 1. 고시문 사본 2부. 끝.

서울특별시

(제3안)

수신 건설교통부장관

참조 택지개발과장

제목 신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결정 보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75호('96.4.3)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-59호('97.3.10)로 구역지정결정(구역범위 및 사업계획)된 신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,

2. 도시재개발법 제4조(재개발구역의 지정)제1항, 제3항의 규정에의거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결정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의거 이를 고시 하였기 보고 합니다.

따로붙임 : 1. 고시문 사본1부. 끝.

서울특별시

(제4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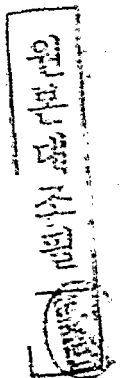
수신 마포구청장

참조 재개발과장

제목 신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결정 통보

1. 재개58531-424호(98.5.13)와 관련입니다.

2. 위대호로 귀 구에서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요청한 신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따로붙임과 같이 구역변경지정결정 하였기 통보하오니 관계내용을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관계부서에 알리어 관련업무 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기



바랍니다.

따로붙임 : 1. 고시문 사본 1부. 끝.

서 울 특 별 시 장

(제5안)

수 신 수신처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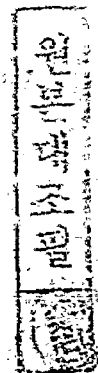
제 목 신덕제3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결정 통보

1. 우리시 마포구 신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따로붙임과 같이 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결정 하였고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
따로붙임 : 1. 고시문 사본 1부. 끝.

서 울 특 별 시 장

수신처 : 도시계획과장, 시설계획과장, 도로계획과장.



고 시

고시번호	1998. 5. 5. 제 152호
담당자	법제실사제강법무담당관
[인]	[인]

서울특별시고시제 1998-152호

신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결정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75호('96.4.3)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-59호('97.3.10)로 구역지정결정(구역의 범위 및 사업계획)된 신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,
2. 도시재개발법 제4조1항 및 제3항의 규정에의거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결정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.
3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재개발과(전화 : 3707-8235~6)와 마포구청 재개발과(전화 : 330-2620~3)에 비치하고 일반인파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98. 5.

서울특별시장

가. 재개발구역의명칭 : 신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

나. 재개발구역 위치 및 면적

위 치	면 적(m ²)			비 고
	당 초	변 경	증·감	
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2-264번지일대	15,408	15,395	감) 13	구역경계 변경없는 단순면적 정정사항

다. 토지이용계획

(단위 : m²)

구분	명칭	당초	변경	비고
공공시설	도로	1,493	1,620	증) 127
택지	택지1 (조합원 및 분양아파트)	11,606	11,548	감) 58
	택지2 (임대아파트)	2,309	2,227	감) 82
계		15,408	15,395	감) 13

라.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정비 계획

구분	노형	세분류	번호	폭원 (m)	기능	사용 형태	연장 (m)	위치		비고
								기점	종점	
당초	소로	2	1	8	구획도로	일반도로	27	신공덕동 10-34	신공덕동 10-44	위치 및 규모 변 경 없음
변경	소로	2	1	8	국지도로	일반도로	27	신공덕동 10-34	신공덕동 11-5	
당초	소로	3	1	6	구획도로	일반도로	96	신공덕동 11-5	신공덕동 11-24	
변경	소로	3	1	6	국지도로	일반도로	96	신공덕동 11-5	신공덕동 2-124	
당초	소로	3	2	6	구획도로	일반도로	122	신공덕동 2-123	신공덕동 2-601	
변경	소로	3	2	6	국지도로	일반도로	122	신공덕동 2-123	신공덕동 2-588	

마. 건축시설계획결정(변경)조서

결정 구분	지구구분		획지구분		추원용도	건폐율 (%)	용적율 (%)	높이(m) 층수(층)
	명칭	면적(m ²)	명칭	면적(m ²)				
당초	신공덕 제3주택	15,408	택지1	11,606	분양아파트	25이하	250이하	22층이하 59.6m이하
			택지2	2,309	임대아파트	25이하	250이하	22층이하 59.6m이하
변경	재개발 구역	15,395	택지1	11,548	공동주택(조합원 및 분양아파트)	25이하	250이하	22층이하 59.6m이하
			택지2	2,227	공동주택 (임대아파트)	25이하	250이하	22층이하 59.6m이하

바랍니다.

따로붙임 : 1. 고시문 사본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(제5안)

수신 수신처참조

제목 신덕제3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결정 통보

1. 우리시 마포구 신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따로붙임과 같이 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결정 하였기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
따로붙임 : 1. 고시문 사본 1부. 끝.

주택재개발과장

수신처 : 도시계획과장, 시설계획과장, 도로계획과장.

